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우수 인재의 공직진출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는 등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경력 등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 별표7, 별표8)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의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인재들의 원활한 공직진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

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개선(안 제2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완화 및 응시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

다.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 등 규정(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역량있는 6급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실시 근거 등 공정한 선발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라. 경채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점수 활용 근거 마련(안 제7조, 제30조, 별표4의2)

공직에 적합한 우수인재의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공통 역량을 검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함.

마.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시 마약류 검사 추가 제출(안 제14조)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공무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마약류 검사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

바. 부정행위자 조치사항 정비(안 제51조)

부정행위자 처분절차 정비를 통한 공정한 채용절차의 확립 도모.

사. 응시요건 및 가산대상 자격증 현행화(안 별표8, 별표12)

국가기술자격증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

아. 기타 조문 정비(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조문 정비를 통해 법적 체계성을 제고하고 법령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를 “1년 이상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청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 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는 시험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마약류 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를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 본문 중 “범위에서”를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배수(제24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를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하고,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로 한다)에서”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년 이상인 경우”를 “3년 이상(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인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력의”를 “자격증 소지에 관한 판단 및 경력의”로, “한다.”를 “하고, 학위 소지 및 학력에 관한 판단은 임용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150퍼센트의 범위에서”를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50퍼센트”를 “1.5배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의 경우에는”를 “제7조제1항제4호 라목 및 마목에 따라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는 시험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를 “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제30조제2항 본문”을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소속 장관의 추천을 받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의2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 시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 • 제8조제4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시험 •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는 시험
----------	--	--

별표 4의2의 비고를 제1호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는 대상시험의 원서접수 연도에 실시되는 시험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시험의 원서접수 연도 이전 또는 이후에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7의 비고 제1호 중 “소지한 후”를 “소지하고”로 하고, 제2호 중 “경우에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를 “경우에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 소지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8의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治工具)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설비보전
	농업기계	
	운전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설비보전
	항공우주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설비보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통신기기,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계정비, 설비보전
농업	식물검역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산림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현행과 같음)
임업	산림조경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산림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현행과 같음)
	산림자원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산림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현행과 같음)
	산림보호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산림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현행과 같음)
	산림이용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산림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현행과 같음)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산림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현행과 같음)

별표 8의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의 개정으로 위 표에서 정한 자격증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통합되거나 둘 이상의 자격증으로 분할되는 경우 또는 그 명칭이 단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자격증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의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비고 제1호 중 “소지한 후”를 “소지하고”로 하고, 제2호 중 “자격증(소요경력포함) 소지 후”를 “자격증(소요경력 포함)을 소지하고”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 소지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6.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의 개정으로 위 표에서 정한 자격증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통합되거나 둘 이상의 자격증으로 분할되는 경우 또는 그 명칭이 단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자격증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
	농업기계	

		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설비보전
	운전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포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설비보전
	항공우주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설비보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통신기기,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계정비, 설비보전
농업	식물검역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현행과 같음)
임업	산림조경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현행과 같음)
	산림자원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현행과 같음)
	산림보호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현행과 같음)
	산림이용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현행과 같음)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현행과 같음) 기능장: (현행과 같음) 기사: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현행과 같음)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별표 12의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의 개정으로 위 표에서 정한 자격증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통합되거나 둘 이상의 자격증으로 분할되는 경우 또는 그 명칭이 단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자격증도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
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7 비고 제1호·제2호·제6호, 별표 8 제2호 비고 제1호·제2호·제5호
: 2026년 8월 1일

2.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제4호 마목, 제30조제1항제4호, 별표 4의2,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 ----- ----- --. ----- ----- ----- ----- ----- ----- ----- ----- ----- 1년 이상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청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

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 또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제7조(시험과목) ①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시험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헌법의 경우 가목 및 나목의 시험으로 한정한다) 과목: 별표 4의2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	4. ----- ----- -----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는 시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신체검사) ①·② (생 략)	제14조(신체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 ----- ----- ----- ----- ----- -----.
<후단 신설>	이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마약류 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생 략)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② ----- ----- ----- ----- ----- ----- -----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생략)

②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어 활용능력을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illegible]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

----- 범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
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 결정) ① (생략)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제24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과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 4. (생략)

③ ~ ⑩ (생략)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
시자격 등) ① (생략)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

_____.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 결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_____

--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하고,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로 한다)에서-----.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
시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장과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달리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 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계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경우에 는

1. · 2. (현행과 같음)

③

3년 이상(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소
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
간을 단축할 수 있다)인 경우-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 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 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 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④ ----- 자격증

소지에 관한 판단 및 경력의 --

----- 하고, 학위 소

지 및 학력에 관한 판단은 임용

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30조(경력경쟁 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

-----.

[illegible]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3. (생략)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제3조

1.5배수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1.5배수

2.·3. (현행과 같음)

4. -- 제7조제1항제4호 라목 및 마목에 따라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응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 이 경우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방법을 달리 정할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서 신설〉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

-----.

제40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 -----

-----, 다만, 제
39조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결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생략)

<신 설>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

정할 수 있다.

② -----

----- 제30조 제2항 -----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소속 장관의 추천을 받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51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알려야 한다. ----- ----- ----- -----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 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연락처	(044) 201 - 8215